

##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제안 답변

건의자	정 * *	연락처	010-8***-2***
제 목	『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』 개정 제안		
건의내용	<p>현행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규정 개정 요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4시간분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</li> <li>- 조례 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지정주차시간의 종료시점부터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주차시간대에 속하는 시간을 차감하고 주차요금을 부과</li> </ul>		
관련법령	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		
담당부서	교통지도과(주차기획팀)	담당자	최 태 진
검토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경우, 전일 또는 주·야간으로 구분하여 차량을 배차</li> <li>-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동 조례에 의거하여 4시간분 주차요금(5급지 기준 2,400원)을 일률적으로 부과</li> </ul> </li> <li>○ 그간 경과(제도 연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 조례 : 1980. 3. 15. 제정 ~ 현재까지(일부개정)</li> <li>- 양천구 조례 : 1996. 7. 20. 제정 ~ 현재까지(일부개정)</li> </ul> </li> <li>○ 시민제안 수용시 장점 및 단점 : 장점-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배정받은 차주의 주차시간대 혼선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도의 운영 취지(전일, 주간, 야간 구분배정)에 맞지 않으며, 배정차량에만 특혜를 줄 수 없음</li> <li>·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단서조항은 주차이용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예) 주간 주차시간 종료시점부터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란 주간주차 시간종료 후 18:00 ~ 23:00까지로 야간주차 배정차량이 정해진 시간대인 19:00~23:00(4시간) 사이에 이용을 할 수 없게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시민제안 불수용 시 장점 및 단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점 : 현재 정상적으로 배정받은 차량이 이용시간 등을 준수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</li> <li>- 단점 : 없음</li> </ul> </li> </ul>		
조치결과	해당 없음		